

조경수목 산책 52



▲ 고창 모양성의 소나무

5. 지난날의 소나무 육송정책

소나무조림의 역사는 신라의 화랑도에 의한 식송(植松)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소나무는 귀중한 임산자원으로 인정되어 보호되었고 조선조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다. 1392년에 전조(前朝)의 종묘 앞에 서 있는 소나무를 베지 말라는 명이 있었고, 1398년에는 종묘 북쪽산에 송충이 피해가 심해서 이것을 잡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송충발생과 그 구제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1406년 제릉(齊陵)의 송충구제를 위해서 장정 680명을 동원하고 사창미를 나누어주었으며, 1417년에는 충재기제(蟲災祈祭)를 올리기도 하였다.

소나무를 심은 기록도 가끔 나타나고 있는데, 1411년에는 서울 남산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장정 3,000명을 동원하였으며 20일만에 걸쳐 작업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1424년에는 봉상시의 일로 예조가 공문을 내려 모든 제단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 《대전통편》공전에는 개인적으로 소나무 1,000그루를 심어서 조림에 성공한 자는 해당 수령이 직접 심사하고 관찰사에 보고하여 상을 준다고 적고 있다. 이때 소나무숲에 천연갱신의 가능성이 시인되어 《목민심서》에 “바람이 불면 솔씨가 떨어져 자연히 솔숲이 이루어지니 금양만 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무를 심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 경 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농학박사

조선시대의 삼림정책으로 금산(禁山)·봉산(封山)·시장(柴場)·임수·향탄산·능원묘의 해자(垓字)·금송(禁松) 그리고 특수 용도를 가지는 수종의 재식과 납세 등을 들 수 있다. 금산은 뽕나무 감의 채취·개간·화전 등을 금하는 숲을 말하는데, 이것은 몇 가지 특성의 삼림으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서울 주변의 산에는 나무를 남겨 풍치를 조성해서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주민의 이용을 금하였으며, 도성사산(都城四山)을 도성내외산이라 해서 금산제도에 묶었다. 1448년경의 서울주변의 산은 무척 황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한 지리풍수가 왕에게 “수도의 산천지세에 있어서 허한 곳, 그리고 광활한 곳에는 나무를 심어 비보를 해야 하며, 지금 서울주변의 산은 황폐해 있으니 나무를 보호해서 산악의 정기를 배양하게 하옵소서.”라는 건의를 하였다. 금산에는 관방금산(關方禁山)과 연해금산(沿海禁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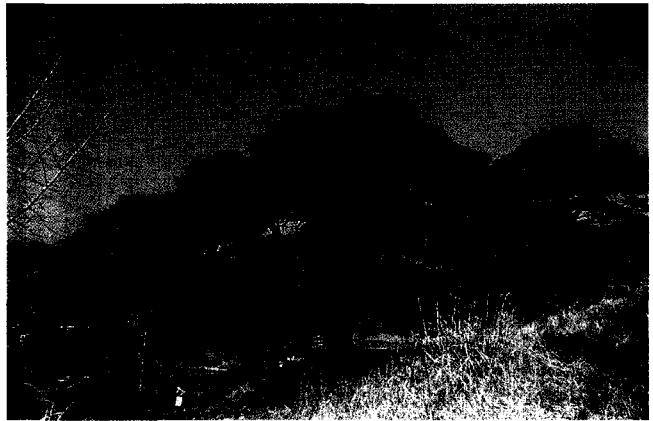
연해금산은 소나무가 주로 자라고 있는 바닷가, 또는 도서지대의 우거진 숲을 보호하고 장차 조선용재와 건축용재를 제공할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선재봉산(船材封山)이라고도 하였다. 1448년에 금산이 구체적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약 200개소를 넘은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 중 약 70%는 포(浦)·도(島)·곶(串)으로 된 지명인데, 이것은 위치상 조선에 편리하고 또 목재운반에 편리한 데 이유가 있었다. 가령, 전라남도 완도는 대표적인 곳의 하나이다.

국가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나무의 벌채를 금한 산을 봉산으로 정하였는데 금산과 별 차이가 없었다. 《속대전》에

“각도의 황장목을 키우는 봉산에는 경차관을 파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10년에 한번씩 벌채하고 강원도에서는 5년에 한번씩 벌채하여 재궁(梓宮)감을 골라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수종은 소나



▲ 영풍 입석의 소나무, 천기물 383호



▲ 의령 성황리의 소나무, 천기물 359호



▲ 전북 남원 보절 진기리 소나무

소
나
부



松政

松政一奉其爲用也至大故其爲禁也至嚴上自宮殿之材下至戰艦漕船之楫必待長養後成此所以制定封山勸業禁伐而昭蒙于大典申之以事目者也

三南及東北海西等六道山陰 山陽 山淸 山淸 山淸 山淸無論封山黃廟封山松田凡宜松之處皆有其數養之節亦有其法 肅宗甲子別撰節目顯示諸道 正宗戊申改撰頒行御製 御製

各道封山○公忠道封山七十三處養安二十洪州
仁瑞山五十一○全羅道封山一百四十二處黃陽三
處長興四順天五○黃海道養安光陽七處
津二十一六○東嶺興陽十二○羅州二養德
大靈光十○古阜一扶安一興德七茂長十一務安
興海南兩廣中平海珍島十一○慶尚道封山六十五
處黃屬十四處松田二百六十四處晉州五處○忠
慶州十處昌原八處金海十一處○密陽九處南萊
二處巨濟二處六處豐基六處德一處南海四處十
一奉化四處○丹稜七處壽二處嶺南十處安東
八處蔚山二處○寧海一處海一處興泉一處興

海二處興山二處興陽田十處○咸興城六處興山興
靈海四處新寧三處迎日二處洞淵川三處○公
興十處英陽一處開原一處○黃海道封山二處長
淵一處順一處江原道封山四十三處興金城四
揚口一處順一處橫城一處羅一處伊川一處原州
三洪川一處江陵一處高城一處襄陽一處淮陽一處
三陟一處萊川一處通川一處平康一處蔚珍三處○咸鏡道松田
二十九處○以上六道封山二百八十二處黃廟六
十處松田二百九十三處

湖西之安眠島濟南之邊山英島古突山八影山金
羅島折羅島嶺南之兩海巨濟海西之巡或長山關
軍之太白山朝鮮 朝鮮五臺山雪岳山嶺北之七寶
山皆以多松香稱於國中而漸不知古至若各處宜
松山嶺號者任一無一株木長異之天冠山卽元世
祖聖後時連船而令開澤然無一河之材童松
之爲物非百年長養不可以爲棟樑而偷斫者乃以
一斤養之一斫之後無可復養其養之之難如此而
取之之易如彼材木之用日廣區區差過數十年宮
室戰漕船之材更無可取之地養者愛之

道九十一日康津縣地院湯田封標節目

觀察使兼巡察使為相老事有國之大政而況黃腸
封山所重何如而奈之何近來紀綱蕩弛各處封山舉皆重
濯以昨年 國役時言之過尤全爲絕不見體大者畢竟
封進未免苟充其為悚慄當復如何雖以標外言之漕
戰船役亦軍 國大事而每當烙斫輒患艱乏或致限
前朽傷之弊或有標內許斫之請此已萬一寒心如是不已則不
幾年而船材亦將無處可斫思之及此寧不驚駭大抵封山禁護有本
鎮本邑焉有水營焉苟若常時散加採求俾不至斧斤之負入則寧
有是哉所當溯考幾年以來各邑地方官及鎮將一併狀 閱論勸小

▲ 만기요람의 송정

▲ 완도송전봉표절목의 첫쪽

무였다.
그리고 1788년에 만들어진《송금절목 松禁節目》에도 “바다 연변의 30리에서는 비록 사양산(私養山)이라 하더라도 일체 벌채를 금지한다.” 라고 하여 나무의 벌채를 금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무를 벤 자는 장 100대의 벌을 가하며, 만일 그 남편되는 사람이 관리이면 파직시키고 한산(閑散)이면 외방으로 보내고 평민은 장 80에 징속을 한다. 도성 내외사산은 한성부의 낭관이 수시로 검찰해서 매달 보고를 하고, 이러한 검찰을 게을리 하면 해당관리는 강등을 시키고 산지기는 장 100대로 징치한다는 등 금제규정이 엄격하였다.



▲ 부안군 변산 도청 모향부락 소나무(90.1.2)



▲ 경기도 이천의 반룡송, 천기물 381호(94.9.30)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도 소나무의 쓰임새가 크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삼남(三南)·동·북·해서(海西) 등 여섯 도에 봉산 282개처, 황장 60개처 그리고 송전 293개처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봉산을 막론하고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소나무를 금양할 것이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숲을 보호하고자 한 노력은 있었으나 정치 및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어 그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규정이 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었는데, 가령 정약용이 지은 <승발송행 僧拔松行>이라는 시는 나무를 심어 좋은 소나무 숲을 사양한 중이 수영소교(水營小校)로부터 무례한 행패를 당하고 그가 심은 어린 소나무를 모조리 뽑아서 앞날의 우환을 미리 막는다는



▲ 전북 남원, 보절, 진기리 반송, 타막솔

諸道松禁事目
 海國大政松居其一蓋備陰雨則為戰繼之用
 運稅穀則為漕船之用上焉而儲官室之材下
 焉而資養送之需其為用也至大故其為禁也
 至嚴相土之宜立地之標錫彌封山星羅基布
 定監官山直以嚴守護禁冒耕入葬以明界限
 守令邊持管領之帥巨道伯控察之生松姑捨
 凡係自枯火枯之類一株半株之微良置烙給
 必報備局倫所輒置重辟事目詳備典律昭載
 雖在倉墨之官奸猾之民庶可以知所畏懼莫

敢犯手而挽近以米法網解弛去皮則罪歲偷
 所則掩跡耕菜則混穉久遠童濯則不思播種
 殆同無法之國事之駭痛已無可言而呼謂巡
 水管摘奸推治豪右以賄賂圖免而殘民藩籬
 之掃又罹馮監色以情債為事而明日斧斤之
 尋又踵焉管領控察之意果如是乎今因患跡
 之摘奸略知兩治之松政而各處諸頃若是
 然蕩然二字猶屬歎後特以勸懲之意略行賞
 罰之典而統以論之一道內過百慶封山無不
 受病嶠南如此他道可知既有事目又有典律

文字曉告殊涉煩複而懸法申令俱出期無刑
 之制快施金石之典乙仍于泰互古今著為今
 式條列于左為齊
 一各邑鎮禁松都監官面監官監考都山直里
 山直等之當初多定專出於著意禁松之意
 而近來紀綱解弛吏不異法許多名色及為
 憑藉作弊之歸或稱以摘奸時情債其欵未
 穀或托以巡山時所騎責立馬匹訖不逾至
 於村間管舍植籬之處則無論材木新舊松

木與否雖在禁標之外混同侵漁豪右則有
 犯不問寃民則行賂乃已種種民瘼難以毛
 舉而真箇禁松日就蕩然此莫非道臣帥臣
 不能檢察守令邊將不善舉行之致而監官
 山直之數多亦足為擾民之一端是如乎此
 則一依甲子節目宜松慶長廣三十里以上
 山乙良山直三名十里以上山乙良山直二
 名十里以下山乙良每山各監官一人差出為於
 三十里以上山乙良從附近一人兼管二三
 十里以下山乙良從附近一人兼管二三

내용으로, 이러한 점을 잘 나 타내준다.

<송금사목>을 반포한 정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궁가와 세도가가 좋은 숲을 점거하게 되자 서민의 삼림이용이 극단적으로 제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 점거되지 않은 숲을 공동의 힘으로 금양하고 세력가에 대항해 나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때 발달되었던 계(契)의 형식을 통한 단체적 자치기능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정조 때를 전후해서 각지에 부락공유림이 확보되고 공동이용이 피하여졌다. 이러한 조직체가 송계 또는 금송계였다. 송계가 발달한 지방에 있어서는 삼림의 황폐가 방지되고 좋은 임상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에는 소나무가 가치있는 나무로 취급되어 삼림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 제도송금사목의 1~4쪽